

朝鮮 世祖의 宗親 양성과 軍事的 역할*

朴 眞**

1. 머리말
2. 조선 초기 종친의 군사적 역할
3. 세조대 종친의 등용
4. 종친의 軍事活動
5. 맺음말

1. 머리말

癸酉靖難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조선 초기 국가제도 정비를 완성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주였으나, 한편으로는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 그의 재위 기간 내내 집착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왕의 종친이면서 靖難을 통해 왕위에 등극했으므로, 왕에게 있어 종친은 왕권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종친은 왕에

게 있어 혈연적인 친족집단으로서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큰 후원 세력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일반적으로 세조의 치세는 그의 專制性이나 국정의 파행적 운영모습과 더불어 조선의 정치·군사·조세 및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의 다양한 제도변화 및 시도가 있던 시기로 그 성격이 정의된다. 쿠데타를 통해 등극한 王이라는 유교적 정통성 결여의 약점을 안고 있던 세조는 다른 어느 왕보다 더욱 확고히 자신의 입지를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세조 자신의 모순된 상황이 종친의 입사에 관한 문제를 선왕대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다. 세조는 적극적으로 종친입사를 추진했으며 왕권과 제도의 확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종친의 입사 문제가 그것을 위해 뒤늦었다는 것이 바로 세조대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 내지는 입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러한 모습은 臣僚에 대한 급변하는 그의 태도에 곧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조는 한명회 등을 비롯한, 그가 신임하는 몇몇의 인물에게 정치적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에 대한 신뢰는 곧 다른 臣僚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세조의 정치적 성향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세조의 종친 등용이다. 先代에 이미 종친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그 원칙은 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정치일선에 나갈 수 있다는 세조의 말로 깨지게 되었다. 세조대에 대표적으로 활동한 종친으로 언급되는 귀성군 준은 세조의 말년에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데 앞장세워졌고, 영의정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세조의 신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예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귀성군 등용 이전에도 이미 세조는 그의 집권과 맥을 같이 하여 많은 종친들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侍衛로, 때로는 정치적 조력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세조대의 특징적 단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조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

* 이 논문은 2007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사학 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순천향대 강사

미 축적되어 있다.¹⁾ 이를 통해 특정 세력에게 편중되어 있던 세조대의 정치상과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려는 세조의 노력, 그와 더불어 조선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완성되는 과정, 그리고 세조가 가장 가까운 혈연집단으로서의 종친을 자신의 치세에 적극적으로 등용하려고 했던 모습 등이 파악되었다. 세조대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특수한 직임을 맡은 종친들을 칭하는 여러 명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세조대를 제외한 다른 王代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들로, 세조대의 특징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세조대는 五衛체제가 확립되고 그 兵種이 정비되었으며, 保法에 따른 軍役이 정비되고, 鎭管체제가 자리 잡히는 등 軍制 및 軍役, 國防 多方面에 걸친 軍事的 변화가 눈에 띄는 시기이기도 하다.²⁾ 세조대에 성립된 五衛의 각 兵種은 왕실의 친인척이나 功臣 자손 등을 편입시켜 대우할 목

1) 정두희, 「朝鮮 世祖-成宗朝의 功臣研究」, 『진단학보』 51, 1981; 「臺諫의 活動을 통해 본 世祖代의 王權과 儒敎理念의 對立」, 『역사학보』 130, 1991.
 권연용, 「世祖朝의 佛敎政策」, 『진단학보』 75, 1993.
 김태영, 「조선초기 세조왕권의 專制性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87, 1994.
 한중희, 「朝鮮 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韓國學論集』 22집, 1995; 「朝鮮 世祖代(1455~1468)의 內宗親에 대하여」, 『慶北史學』 21집, 1995.
 한형주, 「朝鮮 世祖代의 祭天禮에 대한 研究」, 『진단학보』 81, 1996.
 최승희, 「世祖代 王位의 취약성과 王權強化策」, 『朝鮮時代史學報』 1, 1997; 「세조대 국정운영체제」, 『朝鮮時代史學報』 5, 1998.
 김윤식, 「朝鮮 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 『서지학연구』 29, 2004.
 강제훈, 「조선 세조대의 조화와 왕권」, 『사총』 61, 2005; 「조선 세조대의 공물대납정책」,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이정주, 「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 2006.
 김순남, 「朝鮮 世祖代 體察使 韓明澮에 대하여」, 『한국사학보』 23, 2006.
 최정용, 『조선조 세조의 국정운영』, 신서원, 2000.

2) 千寬宇, 「朝鮮初期 五衛의 形成」, 『역사학보』 17·18, 김상기교수회갑기념논총, 1962;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 『사학연구』 18, 신석호박사회갑기념특집, 1964.
 車文燮, 「鮮初의 忠義·忠贊·忠順衛」, 『朝鮮時代 軍制研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3.
 閔賢九, 「朝鮮初期 軍事制度和 政治」, 韓國研究院, 1983.
 박 진, 「族親衛의 설치와 성격」, 『사총』 65, 2007.

적으로 설치된 것과 正兵과 같은 軍役을 위한 兵種, 甲士 등과 같은 직업 군인이 소속되는 兵種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중 族親衛, 忠順衛로 대표되는 왕실 친인척이 소속되는 대우병종이 성립되고 운영되었다는 것이 세조가 왕실 친인척을 군사제도 내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실 세조는 이미 수양대군 시절부터 각종 兵書 등의 편찬에 간여하였으며 武將的 면모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치세에 다각화된 군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조선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國防과 軍事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세조는 몇몇의 특정 인물을 신임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따라서 그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몇몇 인물의 전횡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혈연집단인 종친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세조가 비단 왕실의 친인척을 위한 대우병종을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혈연적으로 보다 가까운 종친을 등용하여 軍事的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왕의 혈연집단인 종친이 조정에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이 軍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배재되었던 왕실 종친들이 재등용되는 시기인 세조대에, 이들의 군사적 활동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조선 초기 종친의 군사적 역할

태조가 조선을 건국함에 있어 그의 아들들과 종친은 각기 소유하고 있던 私兵을 통해 막강한 武力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국 과정에서 커다란 역

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조선 건국과 동시에 兵權을 장악함으로써 자칫 혼란해질 수 있었던 國初의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왕조가 개창되던 날에 종친과 大臣은 王命으로 諸道의 군사를 分領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³⁾ 왕자인 芳果, 芳遠, 芳蕃, 駙馬 李濟는 義興親軍衛節制使, 태조의 庶弟 李和는 開國功臣·商議門下府事·義興親軍衛都節制使·義安伯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⁴⁾ 종친의 입지가 당시 어느 정도의 위세를 가졌는지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太祖의 從弟 枝, 조카 天祐, 朝, 淑 등도 역시 節制使나 承旨, 中樞院使 등의 職任을 맡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國初에는 종친이 국정 운영과 왕권 안정 등에 있어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종친 및 외척이 개입되어 권력 투쟁이자 왕위 쟁탈전인 왕자의 난이 두 차례 발생했고, 그 이후 건국 초의 혼란했던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私兵을 소유한 종친 및 외척들은 왕에게 있어서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종친과 외척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⁵⁾ 태종은 사병혁파를 시작으로 하여 兵權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⁶⁾ 사병 혁파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지만, 태종의 의지는 강력했고 점차적으로 종실 및 외척의 정치 진출 또한 금지시키는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사병혁파 조처로 인해 政權개입에 제한을 받게 된 종친과 외척들은 태조의 직계, 즉 正派나 아니냐에 따라 직계 후손들은 封君되었고 이는 종친을 王統으로써 구분하여 편제하는 작업의 시작이었다.⁷⁾ 즉, 종친들은 태조와의 혈연관계에 따라, 직계 및 방계로 구분되어 세 개의 족보에 나뉘어 등재되었는데, 이는 왕위 계통의 혼란을 막기 위한

3) 『태조실록』 권1, 원년 7월 정유.

4) 『태조실록』 권1, 원년 8월 병진.

5) 『정종실록』 권1, 원년 6월 경자.

6)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주3)의 閔賢九 논문 참조.

7) 『태종실록』 권22, 11년 12월 정유.

조처라고 언급되었으며,⁸⁾ 종친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일부 종친들은 여전히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다.⁹⁾ 이들은 바로 王統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태종의 庶兄弟들이며, 곧 李天桂, 李元桂, 李和 및 從弟인 李枝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주로 摠制 등 武官職과 恭安府·仁壽府 등 왕실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관서에 임명됨으로써 '벼슬할 수 없는' 태조 직계후손 종친과는 구별되었다.¹⁰⁾ 이들은 결과적으로 태조가 말한 '종친'의 범위에는 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태종과 寸數로는 매우 가까운 종친임에도 불구하고 비태조계라는 이유로 각종 관직에 제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을 왕위 계통과는 관계없는 인물들로 규정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武官職을 비롯한 예우직을 제수한 것이다.

태종 14년에 왕위 계통에서 벗어나는 왕실 종친들 및 외척을 예우하기 위한 기구로서 돈녕부가 설치되면서, 이른바 '非太祖系' 종친들은 돈녕부의 관리로서 자리하게 되었다.¹¹⁾

그런데, 세종대부터 이후 文宗, 端宗에 이르는 시기까지 원칙적으로 入仕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관직에 제수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大君시절의 세조인 것이다. 세조는 晉陽大君이란 이름으로 세종대에 田制詳定所 都提調 및 壽春色提調가 된 것이다.¹²⁾ 文宗도 首陽大君(세조)을 慣習都鑑 都提調에 임명했다. 이때 사간원에서 이것을 문제 삼자 문종은 '말을 사람이 없고, 중요한 기관이 아니니 다시 말하지 말라'며 수양대군을 그대로 두었다.¹³⁾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태종대에 비태조계 종친만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는 명백히 비교되는 일이라 하겠다. 또

8) 『태종실록』 권23, 12년 10월 무인.

9) 종친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는 金成俊, 『宗親府考』, 『史學研究』 18, 1964(『韓國中世政治史研究』, 一潮閣, 1985)에 『朝鮮初期의 宗親府』로 재수록) 참고.

10) 『태종실록』 권23, 12년 5월 병술.

11) 돈녕부에 대해서는 박진, 『朝鮮初期 敦寧府의 成立』, 『한국사학보』 18, 2004 참고.

12) 『세종실록』 권100, 25년 11월 갑자; 『세종실록』 권101, 26년 9월 무인.

13) 『문종실록』 권13, 2년 4월 무자.

한 그 인물이 유일하게 세조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조의 능력이나 그 맡은 직책의 중요성이 어찌 되었건 간에 원칙적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종친, 그것도 大君의 提調職 제수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계유정난 직후에는 領議政府使·領經筵·書雲觀事·兼判吏兵部事로 임명되어 조정의 실제적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¹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조는 능력이 있는 종친은 누구나 등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세조 자신이 왕에 등극한 이후 그 원칙은 실제화되기 시작했다.

3. 세조대 종친의 등용

(1) 혈연에 따른 편제

계유정난을 論功하는 靖難功臣에 세조 자신이 이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하여, 세조대의 종친은 여러 차례 공신으로 봉해졌으며 종친을 관직에 두고 활용하려는 세조의 계획은 후반기로 갈수록 본격화되었다. 급기야는 치세 말년에 왕권에 도전하는 叛逆 사건인 이시애의 난이 발생하자 종친을 將帥로 임명하고 세조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 출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功臣집단의 일원으로서 朝廷에 간여했던 종친들은 점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갔으며 역할 또한 강화되어 갔다. 세조는 자신의 친인척들을 조정에 포진시키고 이들을 왕권의 확립 및 강화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했으며 그를 위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세조의 종친 등용은 가히 파격적인 조처라고 할 만했으나, 관료들의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세조가 종친 등용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 사실

14) 『단종실록』 권8, 원년 10월 갑오.

만이 간간이 드러날 뿐이다. 조선 초기의 법률과 제도가 확립되어 가는 이 시기에, 왕실 친인척의 등용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도 어긋날뿐더러 이들을 절대적으로 정치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太宗의 노력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만큼 세조에게 있어 자신의 왕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종친을 위시로 한 왕실 친인척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종은 왕실 종친의 군사력이 왕위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조선 건국과정에서 보이듯이 私兵을 소유한 종친의 정치적 행보가 정권의 향방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친들의 兵權을 빼앗았던 것이다. 반면 세조는 그 치세 후반기부터 종친에게 軍職을 제수하고 다수의 종친이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도록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수의 종친이 군사적인 성격을 부여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軍政에는 간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태종이 종친의 군사적 성장을 우려하여 이를 애초에 차단하였다면, 세조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종친이야말로 왕의 최측근에서 왕권을 보좌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였던 것이다.

세조는 본격적인 종친등용을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혈연에 따라 종친들을 내종친과 외종친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앞서 태종이 왕위계통을 밝히고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태조의 직계와 방계를 구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세조는 혈연적 親疎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종친과 외종친을 구분한 것이다.

세조대에 종친을 지칭하는 용어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內宗親’이다. 이 용어는 端宗代에 처음 등장하지만¹⁵⁾ 그 이전 시기에는 찾

15) 『단종실록』 권8, 1년 10월 戊申, “…… 一, 執義 河緯地 屢請面對 上欲引見 皇甫仁·金宗瑞 等抑塞 以杜言路 又持平 柳誠源 於經筵極陳 仁·宗瑞 等專權不法之事 上皆依允 仁·宗瑞 等不避 親子加職 欺罔天聰 竝皆仍舊 忌 誠源直言 改除他職 汲引柔懦者 黨己者 布列臺諫 肆行無忌 又首陽大君啓請 依舊例接見內宗親, 仁等憚言已失 亦沮之.”

아볼 수 없고,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이 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조대에 등장한 용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왕의 측근에 侍從·直宿하면서 왕명을 출납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종친이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⁶⁾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종친은 어떤 이들을 일컫는 명칭이었는가?

내종친에 관한 세조대의 기록은 동왕 3년의 실록 기사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내종친들은世子와 더불어 豊물을 올리는 데 입시하고 있는데,¹⁷⁾ 이를 시작으로 '내종친'이 본격적으로 入侍, 觀射, 常參 등의 기록에 등장한다.

내종친은 사료에서 여타의 종친보다 월등하게 높은 빈도로 눈에 띄며, 관료들 및 다른 종친들과 더불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내종친의 구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는 다음과 같다.

(왕이)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았다. 내종친 영해군 이상 영의정 정인지, … 등 26인이 입시했다. 명하여 모두 殿에 오르게 하여 置酒하고 다섯 순배를 돈 후 파하였다. 또 賓廳에 명하여 전밀 등에게 잔치를 내렸다.¹⁸⁾

위의 기사에서 세조가 상참을 받을 때 내종친 영해군 이상과 영의정 및 여러 신료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영해군 瑋는 세종 후궁 愼嬪 김씨의 소생으로 세종 17(1435)년에 태어나 기사 당시(세조 3년, 1457)의 나이는 23세였으며 세조와는 이복형제 관계에 있었다. 영해군이 당시 생존해 있던 세조의 형제 중 가장 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사료에서 언급한 '영해군 이상'이라 함은 일단 세조의 입장에서 형제관계에 있는 종

16) 주 1) 한충희의 논문, 「朝鮮 世祖代(1455~1468)의 內宗親에 대하여」, 『慶北史學』 21집, 1995, p. 12.
 17) 『세조실록』 권6, 3년 1월 丁卯, “… 上與中宮御 康寧殿 海陽大君 進豐呈 世子與內宗親等 入侍 ….”
 18) 『세조실록』 권7, 3년 5월 정해, “御思政殿受常參 內宗親寧海君以上 領議政鄭麟趾 … 等二十六人入侍 命皆上殿置酒 行五爵而罷 又命於賓廳 賜全密等宴.”

친 중 영해군보다 나이가 많은 종친을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¹⁹⁾

세종이 소헌왕후와의 사이에서 둔 8남 중 첫째 문종과 둘째 세조를 제외한 여섯 아들 중 安平大君과 錦城大君은 단종 복위사건과 관련하여 세조와 대립관계에 있다가 죽음을 당했고, 廣平大君, 平原大君은 세조대에 이미 죽어서 남아 있는 동복형제는 臨瀛大君과 永膺大君뿐이었다. 이들은 세조의 형제로 종친과의 행사 등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임영대군은 文武에 재능을 보이고 政事에 있어 세조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²⁰⁾ 그러나 이들은 大君들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인 宗溥寺 提調 등의 직함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 현저한 정치활동을 펼쳤다고 하기보다는 상참에 입시하고 각종 연회에 참석하는 등 왕의 형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들은 자주 내종친으로 불리며 史料에 등장하고 있다.²¹⁾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임영대군, 영응대군의 명칭이 각각 내종친과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료가 많음을 볼 때 이들은 결국 내종친의 범주에 확실히 포함된다고 하겠다.

한편 앞서 '내종친 영해군 이상'이라는 사료적 표현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大君만이 내종친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內宗과 銀川君 攢, 玉山君 躋, 의금부제조 정식, 승지 등을 불러 박종의 가 죽음에 이르게 된 연유를 의논하여 이르기를 …²²⁾

19) 영해군의 손아래 왕자들 중 潭陽君은 문종 즉위년에 12세의 나이로 卒하였고(『문종실록』 권1, 즉위년 3월 갑인), 惠嬪 楊氏 소생의 漢南君과 永豐君은 혜빈이 단종을 양육했다는 이유로 유배당했다(『세조실록』 권1, 1년 윤6월 을묘; 계해). 혜빈의 또 다른 아들인 수춘군도 이미 단종대에 卒했다(『단종실록』 권14, 3년 6월 기묘). 따라서 영해군이 당시 세조의 동복, 이복형제들 중 가장 어린 동생이 된다.
 20) 『예종실록』 권3, 1년 정월 병자.
 21) 『세조실록』 권27, 8년 정월 임자, “壬子 設曲宴于兩儀殿 王世子與內宗親 讓寧大君禔 孝寧大君補 臨瀛大君瑒 永應大君琰 領議政鄭昌孫 左議政申叔舟 右贊成具致寬 六曹參判以上 承旨等入侍.”

이라 하여, 內宗과 은천군 찬, 옥산군 제 등을 불렀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은천군 찬과 옥산군 제는 각각 태종 후궁 소생 慶寧君 榘와 謹寧君 禮의 아들이며, 촌수로만 따진다면 세조와 중형제지간이 된다. 이들은 內宗에는 포함되지 않고 따로 언급되는 인물인 만큼 내종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경녕군과 근녕군은 先王인 태종의 衆子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아들인 은천군과 옥산군은 비록 세조와 중형제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王統에서는 한참 떨어진 인물들이다. 즉, 경녕군과 근녕군은 先王의 庶兄弟이므로 왕위계승문제에서 한 단계 물러난 인물들이고, 은천군과 옥산군은 이들을 부친으로 두어 現王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된 종친인 것이다. 비록 이들이 君의 칭호를 띠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세조의 입장에서 왕의 정통을 잇지 못하는 먼 종친이 되는 셈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조는 자신과의 관계 및 先王과의 계통을 따져서 종친을 내종친과 외종친으로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명칭은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 하기보다는 왕과 종친의 혈연적 친소관계에 입각한 구분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세조대의 외종친은 내종친의 존재보다 먼저 확인된다. 세조 즉위년의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吏曹에 傳旨하기를, “誼城君 家, 보성군 합, 鎭南君 終生, 德泉正 厚生은 이미 經書의 大義를 통달하였으니 취학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허락하고, 그 아들·사위·동생·조카 가운데 1인을 加資하여 勸勉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종생과 후생에게 명하여 예궐하는 종친의 예에 의하여 侍衛하게 하였으니, 舊例에 무릇 외종친은 朝參만 하고, 특명이 있지 않으면 예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²³⁾

22) 『세조실록』 권37, 11년 9월 을사, “召內宗及銀川君 嶺 玉山君 躋 義禁府提調 鄭軾 承旨等, 議推朴從義 致死之由 謂曰 ….”

23) 『세조실록』 권2, 1년 8월 임술, “傳旨 吏曹曰 誼城君家 寶城君容 鎭南君終生 德泉正厚生 已通經書大義 許免就學 子婿弟姪中 一人加資 以示勸勉 仍命 終生厚生 依詣闕宗親例侍衛

세조는 의성군 심을 비롯해 經書의 大義를 통달한 종친들의 취학을 면제하도록 하고, 진남군 종생과 덕천정 후생을 종친의 예에 따라 侍衛하도록 했다. 무릇 外宗親은 朝參만 허용하고 特命이 아닌 이상 예궐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세조가 진남군과 덕천정에게 侍衛의 명을 내렸으므로 이들은 종친과 더불어 시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남군은 정종의 후궁 이씨 소생으로, 세종대 宗學을 설치함에 학문이 있어 宗學有司를 맡았으며 세조 12년에는 종실 가운데 가장 어질다는 이유로 司饗院과 掌苑署의 提調를 맡기도 했다.²⁴⁾ 덕천정 역시 정종의 아들로 이후에 덕천군으로 봉해졌는데 그의 아들 新宗君 李孝伯은 이시애의 난 때 先鋒將에 임명될 정도로 궁술에 능했다고 한다.²⁵⁾ 진남군과 덕천군은 모두 공정왕(정종)의 후손으로, 이로써 외종친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인물들이 일부 가늠된다.

한편, 좀 더 명확히 외종친을 정의하기 위해 세종대의 다음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교하기를 … “종학에 대군·제군의 廳이 따로 있으나, 외종친과 함께 있는 날이 오래 되면 반드시 서로 친해져 그 狂妄한 일을 본받을 것이고, 또 아침 문안 뒤에 종학에 갔다가 저녁에 또 와서 문안한다면 왕래하여 한가히 노는 것을 아이들이 즐기게 될 것이니, 나는 잔독을 두는 것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수검이 아뢰기를, “대군과 제군이 종학에 나아가는 것은 예전에 폐단이 없습니다. 더구나 종학 안에서 제군은 외종친과 청을 달리하므로 서로 섞여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이 일은 『大典』과 『續錄』에 실려 있지 않은데 ….”²⁶⁾

舊例凡外宗親隨例朝參 非有特命 不許詣闕 故有是命.”

24) 『성종실록』 권8, 1년 11월 기축.

25) 『성종실록』 권201, 18년 3월 계축.

26) 『성종실록』 권278, 24년 윤5월 임자, “傳曰 … 宗學雖別有大君諸君廳 然外宗親相處日久 則必相親狎 而效其狂妄之事 且朝問安後往仕宗學 夕又來問安 則往來間遊 兒輩所樂 予意贊讀之設無妨 (閔)壽謙 啓曰 大君諸臣就宗學 在昔無弊 況宗學內諸君與外宗親異廳 萬無相混

위의 사료에서와 같이 成宗은 宗學에 贊讀官을 두는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종학에 大君·諸君의 廳이 따로 있지만 外宗親과 오래 함께 있게 되면서 친해져서 狂妄한 일을 배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수겸의 啓에서도 宗學 내에서 諸君과 外宗親이 廳을 달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성종대에 언급되는 외종친은 君號를 띠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외종친은 여러 종친들 중 大君이나 君보다 왕으로부터 혈연관계가 먼 正, 守, 令, 監 등의 爵을 가진 인물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²⁷⁾ 이들은 종친이기는 하지만, 왕과의 일정 거리가 있는 종친들이고 이들이 곧 외종친으로 일컬어진다는 사실이 위의 사료에서 드러난다. 결국 성종대의 외종친은 大君과 諸君을 제외한 王子群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大君과 諸君은 내종친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외종친이 現王과 혈연적으로 일정한 거리가 있는 종친이었다는 것은 이후 중종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 政院에 전교하기를, “養老宴은 나라의 중한 일이니 흉년이 들더라도 부득이 해야 한다. 또 『大典』에 종친의 進宴은 한 해에 두 번 하는 것이 恒式으로 되어 있는데, 禮典에 실려 있는 일을 근래 禮官이 전혀 아뢰지 않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내종친은 오히려 불시로 불려서 볼 수 있으나, 외종친은 이 잔치 때가 아니면 볼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우애의 정이 아주 박하니, 근래 중지한 뜻을 예조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²⁸⁾

(나) 주장에 나아갔다. 검토관 任權이 아뢰기를, “지금은 왕자 이하 종친들

이 자주 뵈지 못하니, 先王朝에서 하신 일과 다릅니다…” 참찬관 成世昌이 아뢰기를, “… 또 友善堂은 오로지 종친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혹 香室에 나가 향을 받으러 오는 종친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외종친은 먼 듯 하나 선왕으로 본다면 같은 자손입니다” 하였다…²⁹⁾

사료 (가)는 내종친은 불시에 불려서 볼 수 있으나, 외종친은 종친이 進宴하는 잔치가 아니면 볼 수 없어 우애가 깊지 않으니 근래에 宗親進宴을廢한 뜻을 아뢰라는 중종의 傳敎이며, 사료 (나)는 중종이 晝講에서 臣僚들과 종친을 접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왕자 이하 종친과 蹠屬宗親은 연회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데, 실상 ‘外宗親’은 먼 것 같지만 先王으로 보면 같은 子孫이니 접견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왕자 이하의 종친’과 ‘먼 종친’, ‘外宗親’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조대의 진남군과 덕천군과 같은 정종의 후손들에게 외종친의 칭호가 쓰인 例 및 성종대와 중종대의 외종친의 쓰임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외종친과 내종친은 現王과의 촌수관계와 王統과의 관계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었고, 당연히 외종친은 내종친보다 疏遠한 관계의 종친을 언급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외종친 역시 내종친의 예와 마찬가지로 종친 중 특정한 인물을 지정하여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現王과의 친족관계에서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遠親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조대의 외종친은 구체적으로 태조-세조로 이어지는 왕위 계통에 속해 있지 않은 정종의 후손들과, 妃嬪의 소생이 아닌 王子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세조는 본격적으로 종친을 등용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일단 종친들을

之理 且此事不錄於大典及續錄…”

27) 『경국대전』 吏典 京官職 宗親府. 종친의 봉작에 대해서는 지두환, 「朝鮮初期 宗親封爵法의 變遷」, 『韓國思想과 文化』 4집, 1999년 참조.

28) 『중종실록』 권29, 12년 8월 병진, “傳于政院曰 養老宴 國之重事 年雖饑饉 不得已爲之也 且大典內 宗親進宴 一年二度 恒式也 禮典所載之事 近來禮官專不啓稟 是何故也 內宗親則猶可 不時召見外宗親 非此宴 則無由得見 友愛之情至薄 近來中廢之意 其問于禮曹以啓.”

29) 『중종실록』 권30, 12년 11월 정유, “御晝講 檢討官任權曰 今王子以下宗親 不得數見 與先王朝事異… 參贊官成世昌曰… 且友善堂者 專爲接待宗親而設也 先王或出香室 見宗親之受香來者 外宗親雖似疎遠 若以先王之視之 則均是子孫也…”

혈연관계에 의해 파악하고 정비하려 했던 것이다. 이후 세조는 내종친과 외종친을 아울러 재주가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이들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내종친에 더 많이 포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자.

(2) 종친 양성 및 등용의 다각화

왕실 종친을 혈연관계에 의해 내외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세조의 종친 등용의 첫 번째 단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치세 후기에 이르러서 종친들의 재능을 고려하여 그들을 다양한 부문에 포진시키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세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활동할 수 있었던 종친들은 세조 9년을 계기로 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여러 직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하여 兒宗 및 陣宗, 任宗, 射宗 등의 명칭이 사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종친이 武班의 職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세조는 寶城卿을 都鎭撫로, 居平正과 進禮正을 衛將로 삼은 데 대해 諫言한 사간원 정언의 고신을 거두게 하면서 '功親一般', 즉 공신과 종친은 한 가지라고 하며 종친의 任事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³⁰⁾ 그 중에서도 兒宗은 세조 9년 이후를 통틀어 가장 눈에 띄는 종친 집단이라고 하겠다.

종친은 일반적으로 좁게는 같은 高祖父를 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兒宗은 철저하게 세조의 의도에 의해서 편제된 인물들이다. 兒宗은 실록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드러나 있다. 세조는 永順君 溥, 龜城君 浚, 銀山副正 徹, 河城尉 鄭顯祖를 兒宗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임 무는 入直이었다.³¹⁾ 兒宗 중 특이할 만한 인물은 정현조인데, 세조는 寵臣

30) 『세조실록』 권30, 9년 6월 경진.

鄭麟趾의 아들이자 자신의 유일한 駙馬이기도 한 鄭顯祖를 兒宗의 대열에 위치시키고, 종친의 일부로서 총애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兒宗인 영순군은 광평대군의 아들, 귀성군은 임영대군의 아들로 모두 세조와 三寸姪의 관계이며, 은산부정(후에 勿丑尹)은 보성군의 아들이자 효령대군의 손자로 세조의 5촌 조카이다. 따라서 이들 兒宗은 세조의 손아래 친족 중 각별한 애정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兒宗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있겠다. 이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³²⁾ 세조의 손아래 친인척들이기 때문에 '兒'의 명칭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父親 또한 세조가 신뢰하는 인물들로서 세종대에 이미 추한 광평대군을 제외하고 임영대군과 보성군, 정인지는 모두 세조대에 朝廷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친 인물들이다.

兒宗이라는 명칭은 세조 9년 사료에 첫 등장할 때부터, 세조가 薨하는 同王 14년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조의 命에 따라 순번을 정해 宿衛했으며 서적의 교정이나 經書 강독, 강무와 사냥 등의 내외활동에 두루 참여하고 있다. 세조가 종친 중에서도 이들을 따로 '兒宗'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불렀던 것은 이들이 곧 세조의 종친 등용의지에 부합하는 연소한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세조는 차후에 文과 武에서 고루 활약할 종친을 뽑아놓고 兒宗師傅를 두어 그에 맞는 교육을 따로 진행했는데,³³⁾ 이들은 각각의 재능 또한 세조의 눈에 들만큼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

31) 『세조실록』 10년 정월 갑인, “永順君 溥 龜城 浚 銀山副正 徹 河城尉 鄭顯祖 等每二人相避入直者 上稱爲兒宗.”

32) 세조 9년에 兒宗으로 지칭된 이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영순군은 20세, 귀성군은 이시애의 난 당시 18세로 기록되어 있으므로(『승정원일기』 肅宗 12년 11월 병술, “龜城君浚 乃臨瀛大君璆之子也 才智出衆 大爲光廟所眷愛 當李施愛之叛亂北關也 浚 時年十八 以都元帥討平凱還 遂策敵愾元勳 弱冠由兵曹入閣 以至首揆 又策翊戴功 成廟朝 有權孟禧者 以浚有人望 國君可當等語 對左參成韓繼美說道 繼美 乃詣闕以告 於是孟禧及崔世豪等 受訊伏法”), 세조 9년에는 14세로 추정된다. 정현조는 1440년 생으로 29세(문과방목), 물거운은 정확한 生年을 알 수 없고 세조 13년에 卒했다(주 24) 물거운 卒記 참조.

33) 『세조실록』 권36, 11년 7월 壬戌, “御勤政殿 放文武科榜 入御思政殿 宗宰及承旨等入侍

던 것으로 보인다.

귀성군과 물거운, 영순군은 武才가 뛰어난 종친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陣法을 시험하는데 각각 三隊의 首將 역할을 맡는 것을 비롯,³⁴⁾ 각종 侍衛나 진법 훈련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 은산부정(물거운)은 陣法에 밝고, 騎兵과 正兵 도모에 능해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³⁵⁾ 영순군은 八卦圖法을 짓는 등³⁶⁾ 물거운에 못지 않게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순군과 귀성군은 세조 12년 登俊試에,³⁷⁾ 정현조는 세조 14년에 別試文科에 급제함으로써³⁸⁾ 자신들에 대한 세조의 기대에 부응했다. 세조 12년에 시행되었던 등준시는 종친이 과거에 참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 시험으로, 종친의 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종친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뛰어난 이들을 장려·등용하고자 한 세조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인데, 여기서 세조의 총애를 받던 영순군, 귀성군 등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세조의 심기를 기쁘게 했을 것이다.

兒宗으로 칭해진 이들 영순군, 귀성군, 물거운, 하성위에 대한 세조의 애정은 이들이 아종으로 불리기 전부터 드러나 있다.

思政殿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政事를 보았다. … 李溥, 李浚, 鄭顯祖, 李徹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賢否를 論한 다음에 구치관에게 이르기를, “부는 천성이 질박하고 정직하니 일을 맡길 만하지만, 遲緩하는 폐단을 면하지 못한다. 정현조는 성질이 본래 정직하고 王命을 전하기를 잘 하

召文科入殿內 傳曰 汝等非他科目之比 予甚重焉 三日遊街後 當賜宴文科于藝文館武學于鎮撫所 以慰之仍設酌 令李封辛錫康 進酒 上親製詩以示之 其詩曰 … 令文臣宰樞兼藝文及新及第和進 仍命書諸軸 賜文科入 召兒宗師傅 金貴知 講小學 愍其年老 特超三級 卽帶銀以榮之.”

34) 『세조실록』 권33, 10년 7월 계유.

35) 『세조실록』 권41, 13년 2월 정미.

36) 『세조실록』 권31, 9년 11월 계해.

37) 『세조실록』 권39, 12년 7월 기사; 『세조실록』 권40, 12년 11월 기사.

38) 『세조실록』 권45, 14년 2월 병오.

지만, 그러나 간혹 昏昧한 곳이 있다. 이철은 심기가 열리고 명랑하지만, 그러나 본질이 후하지 못하여 항상 너무 빨리하는 폐단이 있다. 이준은 心志가 明徹하고 본성이 穎悟하고 또 膂力이 있어서 재주가 세 사람보다 낫지만, 학술이 없으니 이게 恨이 된다. 이 네 사람은 내가 매우 사랑하여 좌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데, 애써 수고시키고 종사하게 하는 까닭은 그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아서 그 中正한 데 맞게 하고 싶은 것이다” 하니, 구치관이 아뢰기를, “진실로 聖上의 말씀과 같습니다. 네 사람은 상상의 은혜를 매우 후하게 받고, 애써 수고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갑절입니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康寧殿에 들어가서 구치관·노사신·이부·이준·정현조·이철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³⁹⁾

세조는 영순군 부, 귀성군 준, 하성위 정현조, 물거운 철 등을 重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賢否에 대해 논의하고 具致寬은 이들 네 사람이 세조의 은혜를 두터이 입었고, 다른 사람보다 (세조를 위해) 바빠 노력한 것이 갑절이나 된다고 아뢰고 있다. 즉, 세조와 구치관은 이들 네 사람이 세조의 총애를 받음과 충성의 정도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을 왕의 가까이에 두고 쓰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조는 이들을 중심으로 종친위주의 親王派를 구성하여 강력한 왕권행사 및 정국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귀성군 준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채 20세가 되기도 전에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파격적인 人事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조의 치세가 끝남과 동시에 이들 종친의 정치적 행보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39) 『세조실록』 권31, 9년 8월 갑인, “御思政殿 受常參視事 … 又召 溥·浚·顯祖·徹 進前論 賢否 謂致寬等曰 溥天性質直 可任以事 然未免有遲緩之弊 顯祖性本正直 善於傳命 然或有昏昧之處 徹心氣開明 然本質未厚 常有大速之弊 浚心志明徹 性本穎悟 又有膂力 才調過於三人 然無學術 是可恨也 此四人者 予甚愛之 不離左右 使勅勞從事者 欲矯其過不及 合於中也 致寬啓曰 誠如上教 四人蒙上恩甚厚 而勅勞倍他 有頃 入御康寧殿 召致寬·思慎·溥·浚·顯祖·徹 設酌.”

한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친 각각의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여러 종친이 세조 치세 후반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군사제도적으로도 종친들을 위한 특수한 兵種이 설치되었는데, 族親衛가 바로 그것이다. 족친위는 왕실의 遠親이 소속되는 兵種으로 세조 10년에서 14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족친위는 試取가 없고 武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을 복무하면 승진하는 대우기관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력은 논외라 볼 수 있다. 사실 족친위에 소속될 수 있었던 왕실 구성원들은 兪宗이나 다음 장에서 설명될 陣宗 및 射宗 등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내종친 및 외종친으로 언급된 종친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했던 것과는 달리 족친위는 왕과 거리가 먼 친인척이 소속되어 祿을 받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친위의 설치가 세조대 五衛의 확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세종대부터 있어 왔던 왕실 구성원의 대우기관으로서 별도의 衛를 설치하는 문제가 종친의 군사적 역할이 부각되는 세조대 후반기에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종친의 軍事活動

(1) 講武 및 習陣, 扈從에의 참여

세조는 왕실 종친의 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 초석작업으로서 내외종친을 설정했으며 兪宗 등을 양성함으로써 왕권의 강화와 유지에 있어 종친의 지원을 기대했다. 세조의 이러한 종친 양성계획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군사적 측면이다. 세조대에는 다른 시기에서

40) 주 2) 박진의 논문, p. 11.

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종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임무가 모두 군사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에서 세조가 종친들을 이용하려 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세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종친들의 軍職 서용 및 군사활동 참여는 세조의 종친 등용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세조 치세에 걸쳐 마련되었던 군역 증가 및 군사제도 개편, 국가방어체계 정비 과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세조대는 軍制 정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세조의 왕권 유지에 있어서도 軍事力이 중요한 요소가 됨은 매우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조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功臣과 종친을 선택했고, 특히 종친들에게는 文으로 대표될 수 있는 공신들의 전횡을 막고 세력 균형을 이루는 측면에서 武的인 요소를 강조했다.

종친으로서 처음으로 軍職에 제수된 인물은 울원군으로, 그가 세조 9년에 평안도의 요충지인 方山鎭을 지켰던 것이 세조대의 종친 중 처음으로 임시직이 아닌 軍職을 맡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⁴¹⁾ 울원군은 학식과 무예를 겸비한 인물로, 이후에 계속하여 軍職을 맡게 되는 것을 보아서 그는 아마도 이 임무를 잘 완수했었던 것 같다.

익현군이 세조 7년부터 강무대장에 제수되는 것을 시작으로,⁴²⁾ 이듬해인 8년에 巨平正, 進禮正, 金山正, 春陽令, 新宗尹 등이 강무시 각 衛의 衛將을 맡는 등⁴³⁾ 다수의 종친들이 다른 대소신료들과 함께 세조 치세 후반기에 적극적으로 강무에 참여하고 있다.⁴⁴⁾ 그 중 춘양부정 徠가 강무시 위장의 역할을 맡은 이후 軍事의 形名을 바르게 하여 군사를 精鍊하도록 하는

41) 『성종실록』의 울원군 줄기에 따르면 계미년, 즉 세조 9년에 방산진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성종실록』 권63, 7년 1월 계해). 주 8)의 김성준 및 주 1)의 한충희의 논문에서는 이를 세조 7년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세조 7년에 울원군의 방산진 관련 기사는 찾지 못했다.

42) 『세조실록』 권26, 7년 10월 병자.

43) 『세조실록』 권29, 8년 9월 무오.

44) 『세조실록』 권29, 8년 10월 정해; 『세조실록』 권34, 10년 10월 임오.

상소를 올리기도 했는데, 종친들이 강무대장으로서의 역할에 그만큼 충실하려 했다는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다.⁴⁵⁾ 물론 강무대장 등은 임시직에 불과하고, 정식 武官職이라 보기 어려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무를 지휘하는 자리였으며, 게다가 왕과 가까운 종친이 강무에서 대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기도 하다.

익현군은 계양군과 더불어 세조가 즉위하면서 좌익1등공신으로 책봉받은 종친이다. 이들은 세종 후궁 愼嬪 김씨 소생으로 세조와는 이복형제들인데, 이들이 세조의 집권과정에서 다른 종친들보다 주목받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좌익공신책봉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세조 즉위 후에 곧바로 관직에 진출하지는 않았고 다만, 왕의 측근에서 侍從과 왕명 출납 등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앞선 연구에서 언급되었다.⁴⁶⁾

이들은 세조 치세 후반기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임시 武官職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조의 종친뿐만 아니라 외척들에게도 주어지는 상황과도 비슷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세조 6년 왕의 외숙인 심희가 守將으로 군무를 총괄하게 하고,⁴⁷⁾ 강무를 지휘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⁴⁸⁾ 한명회가 4도체찰사직을 맡고, 윤사흔이 강무 射隊將이 되는 등 세조와 因緣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대거 軍職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조는 치세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종친을 다만 시위나 왕명 출납을 담당하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軍職에 배치해 두고 이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조는 종친들을 등용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종친을 軍職에 두는 것이었다. 여기서 언급하는 軍職이란, 정식 武官뿐만이 아니라 習陣이나 講武 등 단발적 훈련과정에서 맡게 된 임시직도 포함하는 것이다. 居平正 復, 進

45) 『세조실록』 권31, 9년 8월 정해.

46) 주 16) 참조.

47) 『세조실록』 권 , 6년 10월 병오.

48) 『세조실록』 권 , 7년 2월 기해.

禮正 衡, 金山正 衍, 春陽令 徠, 新宗尹 孝伯이 衛將으로서 講武에서 都鎮撫 및 衛將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사간원에서 寶城君 함을 都鎮撫, 居平正 復과 進禮正 衡을 衛將으로 삼은 것에 대해 종친의 典兵이 不可하다며 문제 삼자 세조는 오히려 이들의 고신을 거두어 버리는 것으로 대응했다.⁴⁹⁾ 세조로서는 종친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신료들의 반발은 사실 예상되는 바였고, 이에 강경하게 대처했던 것이다. 이후 종친은 節度使를 비롯, 都總使 등의 職에 제수되기도 했다. 종친으로서 軍職을 제수 받았던 이들을 살펴보면, 세조 12년 居平正 復이 충청도 병마절도사,⁵⁰⁾ 13년에 밀성군과 귀성군이 겸오위도총부 도총관,⁵¹⁾ 제천군이 겸오위장,⁵²⁾ 금산도정이 병조참의,⁵³⁾ 14년 진례군이 경상좌도 절제사⁵⁴⁾에 임명되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여러 종친들이 군직을 제수받고 있다.

이렇듯 몇몇의 왕실의 종친들이 軍職을 띠고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세조는 나아가 더 많은 종친에게 군사적 역할을 부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한 모습은 바로 세조 9년부터 등장하는 각종 종친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陣宗이라는 명칭의 종친들이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⁵⁵⁾ 射宗, 任宗, 願宗 등이 세조 9년 이후에 눈에 띄고 있다. 이는 특정한 임무를 바탕으로 한 종친의 명칭인데, 이러한 용어들은 兪宗과 마찬가지로 세조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陣宗과 射宗은 그 명칭대로 궁술과 진법에 관련이 된 종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존재는 세조 9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陣宗의 활동

49) 『세조실록』 권39, 9년 6월 경진.

50) 『세조실록』 권38, 12년 1월 임술.

51) 『세조실록』 권41, 13년 1월 기사; 『세조실록』 권 , 13년 1월 병자.

52) 『세조실록』 권42, 13년 4월 무신.

53) 『세조실록』 권43, 13년 9월 무진.

54) 『세조실록』 권45, 14년 3월 갑술.

55) 『세조실록』 권31, 9년 9월 계해.

은 세조 9년과 10년에만 집중되어 있다.

栗元君 李徐이 卒하였다. … 寶城君 李容의 아들이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또 활쏘기를 잘하였다. 正統 정묘년에 처음으로 光成栗元君에 임명되고, 天順 정축년에 保信副正에 승진되었다. 경진년에 經書에 통한 이유로써 彰善大夫를 加資했다. 세조가 종친 중에서 학식과 무예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陣宗과 射宗으로 삼았는데, 종이 모두 선발되어 매번 闕武할 적에도 반드시 명하여 장수로 삼았다. … 정해년에 李施愛가 배반하니 종을 총통 대장으로 삼고 正義大夫를 加資하고 栗元君으로 封하여 보내었다. …⁵⁶⁾

위의 기사에 따르면 율원군 徐은 보성군의 아들로, 經書에 통달하고 弓術을 잘 했으므로, 세조가 學識과 武藝가 있는 종친을 골라 陳(陣)宗, 射宗으로 삼을 때마다 율원군이 모두 선발되어 매번 闕武에서 將帥가 되었다고 한다. 율원군은 이러한 재주를 바탕으로 세조대 종친으로서는 최초로 軍職을 띠고 野人과 맞닿아 있는 平安道를 지키는 임무를 맡기도 했고 李施愛의 亂 때는 銃筒大將이 되었으며 敵愾功臣號를 띠고 威吉南道節度使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율원군의 예로 볼 때 陣宗과 射宗은 군사적 부분에 있어 각각 이론(陣法)과 실기(射宗)에 능력을 보이는 종친들로, 종친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文武에 고루 포진시켜 왕권의 안정과 정국운영의 배경으로 삼으려는 세조의 적극적 의지가 잘 반영되어 조직된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陣宗 및 射宗으로 볼 수 있는 율원군은 세조의 조카로, 세조의 종친 등용계획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세조의 측근에서 진종 및 사종으로 侍衛하면서 신임을 얻어 武將으로서 자리하게 되고,

56) 『성종실록』 권63, 7년 정월 계해, “栗元君徐 卒… 寶城君容之子也 喜讀書 又善射 正統丁卯 初授光成 栗元令 天順丁丑 陞保信副正 庚辰 以通經書 加彰善 世祖擇宗親有學識武藝者爲陳宗射宗 徐 皆在選中 每闕武必命爲將… 成化丁亥 李施愛叛 以徐爲銃筒大將 加正義封栗元君 遣之…”

귀성군과 더불어 이시애의 난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공로로 적개공신의 호를 받았으며 종2품 절도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즉, 대소신료 집단의 文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종친들을 武官職에 대거 포진시켜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키우고자 한 세조의 의도가 종친들을 진종 및 사종으로 양성하는 데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習陣, 御駕隨從, 講武 등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陣宗은 주로 習陣 입시에 참여하고 있고,⁵⁷⁾ 射宗은 射侯의 참가에 주력하고 있다.

진종과 사종의 구성원은 내종친과 외종친을 망라하여 조직되었다. 내종친인 율원군을 비롯하여 提川副正 藍 등의 외종친도 射宗에 속하는 인물이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⁵⁸⁾

願宗은 ‘자원해서 御駕를 따르는’ 인물들이라고 사료에 명시되어 있다.⁵⁹⁾ 이들 역시 별도의 무리가 아니라 내외종친 중에서 行幸時의 御駕隨從을 담당한 이들을 아울러 지칭하는 명칭이며 비록 史料上에서는 願宗이라는 명칭이 1건 등장하지만, 이들은 세조대를 걸쳐 다수 이루어졌던 講武와 習陣, 行幸에 있어 항상 세조의 주변에서 그를 보위하던 종친들이라고 추측된다.

任宗 역시 실록상에 한 번 등장하는 용어이다. 세조가 그의 재위 14년에 온양으로 거둥할 때 보성군 및 대소신료, 內宗, 射宗, 任宗이 호위했다는 기사가 그것인데,⁶⁰⁾ 앞선 연구에서 임종은 명칭상 ‘진종 등의 용례를 볼 때 관직을 띤 종친을 지칭하였다고 추측’된다고⁶¹⁾ 언급된 바 있고 그러한 판단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57) 『세조실록』 권31, 9년 9월 계해; 권31, 9년 9월 갑술; 권31, 9년 11월 신사; 권34, 10년 9월 경진 등.

58) 『세조실록』 권37, 11년 10월 경자.

59) 『세조실록』 권34, 10년 10월 임오.

60) 『세조실록』 권45, 14년 정월 무자.

61) 주 1) 한충희의 논문, 「朝鮮世祖代(1455~1468) 宗親研究」, 『韓國學論集』 22집, 1995, p. 202 주 68). 참고로 제시된 사료 ‘세조 14년 1월 정축은 ‘세조 14년 1월 무자’의 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조대에는 여러 부류의 종친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사용되었는데, 陣宗, 射宗, 願宗, 任宗은 軍事와 관련하여 역할을 맡고 있는 종친으로, 내외종친의 구분이 없이 각 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친들은 모두 해당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弓術 및 射侯 등 武術的 方面에서 다양한 범주를 설정해 놓고 종친으로 하여금 역할을 맡긴 것은 종친들에게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도록 한 세조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陣宗, 射宗, 願宗, 任宗 등이 軍事와 관련되어 동원, 또는 훈련된 내외종친이라는 점은 종친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세조의 의도가 세조 치세 후반기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훈련된 종친들은 세조 13년의 이시애의 난 때 귀성군 준을 필두로 중책을 맡아 난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일조했다. 세조로서는 종친을 군사적 용도로 양성하려했던 그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세조연간 종친의 군사적 활동 횟수

	세조 1~8년	세조 9년	세조 10년	세조 11년	세조 12년	세조 13년	세조 14년	총계
兒宗 ⁶²⁾	0	2	5	2	4	2	2	17
陣宗	0	7	2	0	0	0	0	9
射宗	0	5	1	2	0	2	2	12
願宗	0	0	1	0	0	0	0	1
任宗	0	0	0	0	0	0	1	1

62) 兒宗은 다른 종친들과는 달리 군사활동에서 맡은 임무에 의해 명칭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세조대 후반기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그들의 활동을 같은 표에 정리했다.

(2) 이시애의 난 진압과정에서의 종친의 역할

세조는 재위 13년에 그의 집권에 정면 대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判永興大都護府事 李仁和의 아들로 상당한 財力을 보유하고 있었던 咸吉道 土豪인 이시애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 바로 그것이다.⁶³⁾ 중앙에서 파견된 함길도 병마절도사 康孝文 黨與가 불법을 자행하는 상황 및 호패법과 保法의 실시로 말미암은 군역 부담의 증가 등 지방 토호로서의 위치가 위협받게 되자 함길도 지역의 토착세력들은 반발하게 되었고 이틈을 타서 이시애는 謀反을 핑계로 삼아 강효문 살해를 시작으로 하여, 각 지역의 留鄕所와 호응하여 중앙에서 온 관리들을 죽이고 본격적으로 반란의 기치를 높였다.

세조의 재임 후반기는 그동안 세조가 강력히 추진해 오던 중앙집권적 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는 시기임과 동시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세조를 대신하여 世子와 院相이 서무를 맡는 등 한편으로는 전반기에 세조가 보여 주었던 강력한 왕권행사와는 다른 정치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기에 세조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한명회와 신숙주가 난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세조는 전에 없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회를 亂 진압과정에서 제외하고, 난이 발생하기 직전에 함길도 관찰사로 부임명령을 받아 떠났던 신숙주의 아들 申澍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신숙주와 그의 네 아들을 가두었으며, 병으로 집에서 치료 중이던 한명회는 가택에 연금하고 鈴川君 찬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⁶⁴⁾ 모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던 한명회와 신숙주 등은 오래지 않아 풀려났고⁶⁵⁾ 이 사건은 차후 이시애가 조정중신들을 죽이려는 계획하에

63) 이시애의 난에 대해서는 김상오, 「李施愛의 亂에 대해서(上)·(下)」, 『전북사학』 2·3, 1978·1979; 이동희, 「李施愛 亂에 있어서 韓明滄·申叔周의 역모 연루설」, 『전라문화논총』 7집; 최종택, 「朝鮮初 平安·咸吉道の 地方勢力」, 『동방학지』 99, 1998 등 참조.

64) 『세조실록』 권42, 13년 5월 계미.

65) 『세조실록』 권42, 13년 6월 을해.

날조하여 퍼뜨린 것이라고 진술함으로 인해 일단락되었지만,⁶⁶⁾ 세조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던 한명회와 신숙주가 모반설에 오르내린다는 사실 자체로도 충분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물론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세조는 직접 난을 진압하러 가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 및 준비를 했다는 것이 급박했던 세조의 심경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세조 치세 후반기에 발생한 이시애의 난이야말로 세조의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지방 토호들의 불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고 하겠다. 이 사건을 통해 세조는 더욱더 측근세력에 의지하게 되었으며, 그 모습은 龜城君 浚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것에서 극대화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여겨졌던 이시애 당여의 반란은 곧 함길도 절제사 강효문을 비롯한 관리들이 다수 피살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정의 동요를 일으켰고 세조는 귀성군을 함길·강원·평안·황해 4도 병마도총사로 삼아 난을 평정하게 하도록 했다. 원래 세조는 밀성군 침에게 이 중책을 맡기려고 했으나 그가 병을 이유로 하여 사양했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18세의 귀성군을 파병했다. 귀성군이 젊고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긴, 이와 같은 결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인 것이었다.⁶⁷⁾ 당시 鎮北將軍이었던 康純조차도 다른 主將을 啓請할 것을 고려할 정도로⁶⁸⁾ 귀성군의 도총사 임명은 의외의 것이었고, 그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시애의 난 초기부터 신숙주와 한명회를 비롯한 김국광, 노사신 등 조정의 중신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세조가 귀성군을 굳이 택한 이유가 설명된다. 원래 도총사직을 맡기려 했던 밀성군이나 귀성군 모두 세조의 총애를 받던 宗親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반란에 대처하는 세조의 자세에서 종친의 역할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귀성군은 4도 도총사에 임명되고 이튿날 난을 진압하러 출병했다. 귀성군은 이시애의 난 이전에는 뚜렷하게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었다. 다른 종친들과 더불어 御駕를 호종하거나 觀射에 참석하는 등의 일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다만 그가 육체적으로 남보다 뛰어난 세조가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조는 귀성군과 더불어 아종이라 불렀던 영순군, 물거운, 정현조 등을 매우 아껴 이들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었는데 이때부터 세조는 귀성군의 남다른 체력에 크게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세조 9년 9월에 귀성군은 영순군 부와 더불어 習陣에서 左右廂의 將帥가 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임시적 武官으로 활동하게 되었다.⁶⁹⁾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귀성군은 종친 중에서는 가장 용력이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內需所奴 貴敏이 임영대군을 誣告하면서 귀성군을 ‘大將軍’으로 언급하고 있고,⁷⁰⁾ 13년 1월에 종친으로서 겸오위도총관에 임명되는 것으로도,⁷¹⁾ 그가 쉼 내외에서 꽤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의 능력에 대해 세조가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성군이 이렇게 세조의 신임을 받게 된 데에는 그의 아버지인 임영대군 구의 역할도 컸다고 여겨진다. 임영대군은 세조의 동생으로 武藝가 빼어났으며 아울러 文史까지 섭렵한 인물이었다. 세조의 신임을 받는 형제인 임영대군을 아버지로 둔 귀성군은 타고난 용력과 더불어 그의 집안 배경으로 인해 더욱 믿음직한 세조의 후원군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조는 이시애의 난을 진압할 도총사로 귀성군을 지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이시애가 함길도 절제사 강효문이 난을 일으켰다고 올린 거짓보고에 이미 한명회, 신숙주, 김국광, 노사신 등 조정의 重

66) 『세조실록』 권43, 13년 8월 을사.

67) 『세조실록』 권42, 13년 5월 신사.

68) 『성종실록』 권83, 8년 8월 기해.

69) 『세조실록』 권31, 9년 9월 갑자.

70) 『세조실록』 권35, 11년 1월 병진.

71) 『세조실록』 권41, 13년 1월 병자.

臣들이 대거 반란에 관계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세조는 그 정상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음날 세조는 종실 귀성군에게 적당 토벌의 총책임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후 세조의 직접 출병을 의논할 정도였으니 세조는 그 이전에 자신을 대신해 종실의 도총관을 보냄으로써 亂賊들이 그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시애의 난 수합과정에서 귀성군은 그다지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적진을 향해 진격하지 않고 다만 駐屯하는 행동 및 서툰 지휘로 인해 여러 번 구설에 올랐으나 세조는 그를 절대적으로 믿었고,⁷²⁾ 軍功의 論賞 또한 귀성군의 기록에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다.⁷³⁾ 이전에 한명회 등의 조정 중신이 세조로부터 받았던 절대적 신임이 이시애의 난을 통해 귀성군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이후 귀성군이 종친으로서 영의정까지 오르게 된 사실은 그에 대한 세조의 신임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귀성군과 더불어 영순군 부, 율원군 종 등이 종친으로서 적개공신의 호를 받게 되었다. 영순군은 난 진압과정에서 왕의 방책을 출납한 공이 있었고, 율원군은 銃筒大將으로서 활약했으므로 이 두 종친 또한 적개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 적개공신에 종친이 세 명 책봉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이들이 다른 신료들과 마찬가지로 왕권 보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종친들 행동의 배경에는 조정 중신들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던 세조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 즉 종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세조의 그간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친으로서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귀성군이 세조 사후 성종대에 亂言에 관련되어 정인지, 신숙주를 비롯한 조정 대신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결국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⁷⁴⁾ 또한

세조대의 종친이 철저하게 세조에 의지에 비추어 왕권을 보좌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

5. 맺 음 말

태종 이래 지켜졌던 '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은 계유정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왕위에 오른 세조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세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지키기 위해 종친을 적극 등용하였다. 비태조계 종친에게만 한정되었던 入仕에의 길은 세조의 강력한 종친 등용의지에 의해 능력있는 모든 종친에게 열리게 되었다.

왕실 종친에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親王세력으로 삼으려 했던 세조는 그 첫 단계로 내종친과 외종친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태종이 태조로부터 이어온 왕실의 계통을 확고히 하고자 태조의 璿源과 宗室, 庶兄弟를 구분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같이 세조는 왕위의 계통에 있는 이들을 내종친, 그 외에 先王의 庶子 및 그 자손들을 외종친으로 구분하여 호칭하고 있다. 내종친과 외종친의 구분은 왕과의 혈연적 친소관계를 따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종친의 璿源的 계통에 있다. 결국, 촌수의 문제가 아닌 왕위와의 관계가 내종친과 외종친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종친을 친왕파로 기능하게 하려는 세조의 의지는 종친에게 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兪宗의 양성이라 하겠다. 세조가 친애하는 연소한 종친인 영순군 부, 귀성군 준, 물거윤 철과 세조의 유일한 부마인 하성위 정현조로 이루어진 아들은 세조의 총애를 받는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이 성장한 후 왕권의 강화 및 유지에 미

72) 『세조실록』 권42, 13년 5월 임진 : 『세조실록』 권43, 13년 9월 계해.

73) 『세조실록』 권43, 13년 7월 정묘 : 『세조실록』 권43, 13년 8월 기미.

74) 『성종실록』 권2, 1년 정월 기사 : 『성종실록』 권100, 10년 정월 을유.

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조는 이들을 특별히 따로 교육시켰는데, 이들은 세조 말년에 文武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귀성군은 세조 13년의 이시애의 난 진압과정에서 4도병마도총사를 거쳐 세조 14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라, 세조의 그에 대한 신임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세조는 이들을 중심으로 종친위주의 親王派를 구성하여 강력한 왕권행사 및 정국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세조 9년에 아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세조 치세 후기로 갈수록 종친들은 그들의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종친들은 비록 임시직이기는 하나 강무나 진법훈련 등에서 隊長이나 衛將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陣宗, 射宗, 任宗 등으로 軍事的 측면의 능력이 뛰어난 종친들이 편제되었고 이들은 세조 9년부터 각종 行幸, 講武, 侍衛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국, 모반사건인 이시애의 난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양성되어 왔던 다수의 종친들이 세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활약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종친이 巡察使나 節度使 등 본격적으로 武官職에 제수되는 숫자가 늘어났다.

결국, 세조는 국가체제 정비의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종친입사금지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다수의 종친에게 관직을 제수했는데, 그에 의해 등용된 종친들은 각각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양성되었고, 그 중 세조가 주력한 것은 종친의 군사적 이용이었다. 결국 세조가 종친에게 군사적 역할을 부여했던 것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던 功臣집단에 대응하여 왕권을 수호 및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을 형성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5. 19, 심사수정일 : 2009. 7. 22, 게재확정일 : 2009. 8. 12)

주제어 : 世祖, 內宗親, 外宗親, 兒宗, 龜城君, 이시애의 난, 陣宗, 射宗, 任宗, 願宗

<ABSTRACT>

Appointment of Royal Family and Their Military Role during *Sejo* Reign in *Joseon* Period

Park, Jean

Sejo, the 7th king of *Joseon*, had broken the rule that the royal family members can not be government officials. The family members who were not descendents of Taejo(the founder of *Joseon* dynasty) could be appointed as government officials like other *yangban* bureaucrats because they were not engaged in the king's lineage, however, the direct descendents of Taejo could not.

Sejo declared vigorously that he would engage anyone of ability even royal family members and some of them were assigned to do a military task generally.

The first step to engage royal family was divided them into two parts-inner and outer-according to their lineage. From the beginning of his reign, Se-jo classified royal family and it was for using them as military officers who would strongly support king.

In the later period of *Sejo* reign, royal family was assigned to be military officials. At first, Ikhyon-gun took the responsibility of temporary commander in training tactics (Gang-mu) in 1461 and some royal family acted as commanders in training filed. After that, royal family was appointed as formal military officials in many parts. *Yangban* bureaucrats resisted against *Sejo*'s policy, though, he had ignored it and kept going on assigning royal family.

Simultaneously, *Sejo* spared no efforts to cultivate royal family's diverse military ability. The name of Jin-jong, Sa-jong, Im-jong and Won-jong had appeared from 1463 and it was assumed that what the role and duty were. They were soldiers in charge of training tactics, shooting arrow and guarding and it means that *Sejo* wanted to endow royal family with military role in the late period of his reign. A-jong was most trusted family group by *Sejo* and it was growing up to be influence of court.

The most clear evidence of exposing *Sejo*'s intention using military power of royal family was the suppression of Lee si ae's rebellion in 1467. There was a rumor that the most reliable bureaucrats were engaged to the rebellion and *Sejo* finally promoted his young nephew Guiseoung-gun(龜城君) as the supreme commander to put down the rebellion. The situation was serious and *Sejo* declared that he would go to the front for himself. Although he could not put an idea into practice, royal family was the only group whom he could rely on at the moment. After subjugating of Lee's rebellion, Guiseoung-gun was promoted to be supreme minister as royal family. A chain of events was the result of *Sejo*'s efforts to put royal family as king's supporters with military forces.

Key Words : *Sejo*, royal family, Guiseoung-gun(龜城君), A-jong, Jin-jong, Sa-ong, Im-jong and Won-jong, Rebellion of Lee